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33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조인철 · 박용갑 · 고민정
민형배 · 어기구 · 이해민
김현정 · 정준호 · 박희승
양부남 · 김태년 · 허성무
김동아 · 서천호 · 정일영
박지혜 · 박수현 · 서삼석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 플랫폼 ·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랜섬웨어 공격, 유심(USIM)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 · 피싱 등 사이버위협이 지능화 · 조직화 · 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2차 범죄 및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 특히 국가 기간통신망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침해사고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분야 정보보호 정책 · 제도를 총괄 · 조정하고 침해사고 예방 · 대응 체계를 수립 · 운영하고 있음.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같은 법 제52조에 근거한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침해(해킹, 스미싱, 피싱, 발신번호 변작 등)의 탐지·수집·분석·대응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행정조사 및 사후적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침해사고 현장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증거 확보, 자료 보존 및 근원지 추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특히 피해 기업이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현장 조사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사기관 이첩 이전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수행업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 기술역량을 수사에 연계함으로써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침해사고 대응, 원인분석 및 조사, 발신번호 변작 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5조제23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6호 및 제7호의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범죄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3급 이상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6호 및 제7호의 범죄
2.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20. (생략)

<신설>

21. ~ 50. (생략)

<신설>

-----.

1. ~ 20. (현행과 같음)

20의2. 제5조제23호의2에 규정
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0조의2, 제71조제1
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
제6호 및 제7호의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95
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범
죄

21. ~ 50. (현행과 같음)

제7조의4(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
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
사장이 지명한 자 중 3급 이상

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6호 및 제7호의 범죄
2.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범죄